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214호

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·추진 중이나, 사업계획 및 보상 관련 그간 제기되었던 미비점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, 정보제공을 위한 통지 절차를 통해 주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복합사업계획수립 기준 보완(안 제20조의7제8항)

사업계획 수립 시 지구면적의 15% 이내로 계획하는 대상에 무상으로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「국토계획법」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시설(도로·공원 등) 외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 계획도 함께

포함하도록 보완

나. 현물보상을 위한 개별자산 통지 절차 마련(안 제20조의11)

보상 대상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및 분담금 추산액을 토지주에게 사업 계획승인 또는 시공자 선정 후 120일 내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주민 의사결정을 지원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이메일(sunhyen@korea.kr) 또는 우편(아래 주소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우편 보내실 곳

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총괄과 (전화 044-201-4386, 팩스 044-201-5633)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『정책자료-법령정보/입법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